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핫이슈 보고서

2019년 11월





CCTV 관련 해외 주요국 법제 및 개인정보 침해 대응 동향 (1)

< 목 차 >

- 1. 개요 및 배경
- 2. 주요 국기별 법제 및 관련 동향
 - (1) 미국
 - (2) 유럽연합
 - (3) 영국
 - (4) 독일
 - (5) 폴란드
 - (6) 아일랜드
 - (7) 호주
 - (8) 캐나다
- 3. 결론 및 시시점

1. 개요 및 배경

- ▶ 영상 촬영 장비의 대중화 및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노출 빈도가 증가하여, 영상정보 처리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심화
 - 해외에서는 CCTV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 촬영 장비가 무분별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얼굴인식 기술 등의 발달로 영상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 식별의 위험도가 커지는 문제점 발생
 - 국내에서도 연간 수 백 건의 CCTV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으며, 개인 간 CCTV 설치·운영 관련 신고·상담도 크게 증가하는 등¹ 개인 영상정보 침해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
- 1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들의 개인 영상정보 침해 대응 동향 파악을 위해 본 보고서의 1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제 및 관련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2편에서는 주요 침해 사례 및 대응 동향을 검토

2. 주요 국가별 법제 및 관련 동향

(1) 미국

- ▶ 미국에서는 「비디오감시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²을 통해 사적인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법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율
 - 미 연방의 영해와 영토에서 개인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³
 - 그러나 CCTV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CCTV의 운용에 대한 수행 규제만을 두고 있는 것이 한계
- ▶ 미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CCTV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개발에 관한 보고서(CCTV: Developing Privacy Best Practices; Report on the DHS Privacy Office Public Workshop, 2007.12.17)」를 통해 CCTV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4
 - 이 보고서에서는 CCTV 설치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과 CCTV 설치에 따른 효과 강조
 - 이와 함께, CCTV로 인해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인종 및 성 평등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지적
 - 보고서는 기술(Technology), 국제(International), 커뮤니티(Community), 법집행(Law Enforcement), 법률 및 정책(Legal and Policy) 관점에서의 패널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CCTV 활용의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 개발에 관한 논의 내용을 정리
 - CCTV 관련 정책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

² https://www.rcfp.org/congress-approves-criminal-video-voyeurism-law/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8/s1301

³ https://www.kisa.or.kr/jsp/common/libraryDown.jsp?folder=011975

⁴ https://www.dhs.gov/xlibrary/assets/privacy/privacy_rpt_cctv_2007.pdf



- a. CCTV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의
- b. 영상정보주체들이 촬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c.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보안 확보
- d.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카메라 위치의 제한
- e. CCTV의 부적절한 이용에 대한 감시
- f. 영상정보 보유와 관련된 정책
- g. CCTV 촬영시스템에 접근가능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제공
- h. CCTV 규제와 관련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 ▶ 민간부문에서는 미 보안산업협회(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SIA)가 2001년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 치안유지활동 가이드라인(CCTV for Public Safety and Community Policing Guideline)」제시5
 -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공공장소에서 CCTV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와 시민 권리의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⁶
 - 민간 협회가 제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CCTV를 운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활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 이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의 치안유지 활동 지침 △생산적 공공-민간 보안 협력관계 구축 △추가적인 법률 정보 △연구사례 등으로 구성
 - 특히 활동 지침 부분에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책임(Responsibilities) △지역의 법집행 이행 가이드라인(Local Law Enforcement Implementation Guidelines) △기술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Technical Procedural Guidance) △공공장소에서 CCTV의 잠재적 적용(Potential Applications)의 범위 등을 검토

(2) EU

- ▶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의견서(opinion)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통해 CCTV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원칙 제시
 - EU 29조 작업반7의 「비디오 감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의견(Opinion 4/2004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means of Video Surveillance)8이 대표적 사례

⁵ https://studylib.net/doc/15265904/a-guideline-on-closed-circuit-television--cctv-for-public...

⁶ 이를 위해 미 보안산업협회(SIA), 국제경찰본부장협회(IACP), 국제보안관연합(NSA), CCTV 보안 업계, 시민단체, 입법 담당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약 3년간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작성

⁷ GDPR 도입에 따라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으로 대체됨



- 이 의견서는 CCTV와 기타 영상기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담당자가 준수해야할 지침 제시
- 이와 함께 작업장에서 업무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제한하고 카메라 설치 시 충족해야 할 요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 ▶ EDPS(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가 2010년 3월 공개한 「EDPS 비디오감시 관련 가이드라인(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9을 통해서는 유럽의 각종 기관과 조직들이 참조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관련 권고 사항 제시
 -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과 관련한 명시적인 언급보다는 각종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모범 사례를 제안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각 상황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 강조
 - 또한 규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법률이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들은 CCTV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 지적

(3) 영국

- ▶ 영국의 CCTV 규제는 개인정보규제기구인 ICO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시카메라 부문을 감독하는 SCC(The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를 별도로 지정¹⁰
 - SCC는 실제 감시용 카메라 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요건과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
 - SCC의 역할은 감시카메라 설치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규정의 효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며, 규정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언하는 것으로, 법률 집행권이나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
 - SCC는 내무부(Home Office)로부터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활동
- ▶ ICO는「감시카메라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In the picture: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 and Personal Information)」 11을 통해 영상정보처리 관련 지침 발표

⁸ https://ec.europa.eu/justice/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04/wp89_en.pdf

⁹ 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webdav/shared/Documents/Supervision/Guidelines/10-03-17_Video-surveillance_Guidelines_EN.pdf

¹⁰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

¹¹ https://ico.org.uk/media/1542/cctv-code-of-practice.pdf



- 이 규정은 2008년에 제정한 「CCTV 규정집(CCTV code of practice」을 개정한 것으로서, 영상 감시 관련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CCTV 이외의 다양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포괄12
- 규정의 적용 대상은 △CCTV와 △기타 영상 감시 기기로 구분되며, 기타 영상 감시 기기에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장치(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신체착용 카메라, 드론, 기타 개인의 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포함됨
- 이 규정은 CCTV와 기타 영상 감시 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에게 적용
-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모든 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저장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의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영상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해당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제한됨
- 영상기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2013년 6월 발표된 「감시 카메라 설치 규약(The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2013)」은 치안과 테러방지 목적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운영 요건과 기술적 기준 등을 제시
 - 이 규약은 법률과 같은 강제성은 없으나 CCTV 및 감시카메라 운영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 카메라 사용과 관련해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카메라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 규약은 특히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
- ▶ 민간영역에서는 영국 보안산업협회(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가 2006년 10월 CCTV의 녹화범위를 제한하는 내용과 방법을 다룬 「CCTV 프라이버시 마스킹 가이드(CCTV privacy masking guide)」제시
 - 이에 따르면, CCTV의 실제 녹화범위를 제한하는 물리적 마스킹과 녹화 후 화면의 조작을 통한 전자적 마스킹 가능
- 12 이 규정은 모든 종류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대상으로 하므로 CCTV와 같이 특정 위치에 설치하는 고정식 기기는 물론 다양한 이동식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포괄



• 또한 녹화가 금지된 특정 유형의 영상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녹화 자체를 방지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13에 대해서도 언급

(4) 독일

- ▶ 독일의 CCTV 관련 규정은 연방정보보호법상의 원칙들을 근거로 하되, 형사소송법, 경찰법, 집회법 등 개별법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특징
 - 독일에서는 2001년 제정된「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tz)」을 2003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영상 감시에 관한 규정 신설
 - CCTV 관련 내용은 영상 감시 항목에 포괄되며, CCTV 사용과 관련해 영상 감시가 허용되는 경우 감시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지적
 - 이와 함께 △공공의 안전과 범죄수사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해당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수집한 정보가 특정 개인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 처리 및 이용에 관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 △자료가 목적 달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법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
 - 단,「연방정보보호법」보다는 각 주의 주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별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5) 폴란드

- ▶ 폴란드 의회는 2018년 5월 직장 내 직원들의 모니터링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CCTV를 통해 직장 내에서 영상 감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제시¹⁴
 - 이 법은 노동자가 수행한 근무 시간 및 근무 외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감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 반면 직원의 안전 보장, 재산 보호, 생산 프로세스 통제, 영업 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서는 영상 감시 허용
 - 한편, 개정 고용법은 GDPR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법규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영상 감시 및 전자메일 모니터링에 관한 규칙 설명

¹³ 영상 감시 및 녹화되는 화면에서 인가되지 않은 영상은 녹화 자체가 되지 않게 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아이크 처리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하는 기술

¹⁴ https://iapp.org/news/a/poland-regulates-workplace-monitoring/



(6) 아일랜드

- ▶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er)는 2018년 개정된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권 외에도 벌금 부과 권한을 최초로 확보¹⁵
 - DPC는 2018년 3월 전국의 스마트 CCTV 사용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조사를 통해 아일랜드 경찰조직인 Garda Síochána가 운영하는 CCTV와 지방자치기구가 데이터 컨트롤러로서 운영하는 CCTV 현황 검토
 - 이는 자동 번호판 인식 장치를 포함한 하이테크 카메라 도입 계획 등으로 인해 촉발된 개인정보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 조치

(7) 호주

- ▶ 호주에서는 연방, 주, 지방 단위로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 감시 장비를 이용한 도청과 영상촬영,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추적 제한
 - 「감시장비법(The Surveillance Devices Act)」을 통해 호주 정부기관들의 감시 장비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주 단위 및 지역단위의 치안 활동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의 적용을 받는 기업일 경우, CCTV를 비롯한 감시 장비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 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PPs)」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 CCTV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개인영상정보를 녹화하기에 앞서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며, 녹화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 주(州) 단위의 법률을 통해 CCTV의 설치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호주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인 OAIC(The Office of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해당 주 또는 지역의 법무부를 통해 관련법과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정보를 얻도록 권고
 - CCTV와 관련한 주 단위의 법제로는 2012년 뉴사우스웨스트주에서 제정한 「공공장소의 CCTV 설치와 운영을 위한 뉴사우스웨스트주의 정책과 가이드라인(NSW Government Policy Statement an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Public Places, 2012)」이 대표적

¹⁵ https://eurocloud.org/news/article/gdpr-with-an-irish-flavour-the-irish-data-protection-act-2018/



(8) 캐나다

- ▶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OPC(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는 「사적 영역에서의 공개 영상 감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vert Video Surveillance in the Private Sector」 16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을 위한 지침 제공
 -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민간 기업들이 대중을 상대로 수행하는 공개적인 영상 감시 상황에 적용
 - 영상 감시를 고려하거나 계획할 때 지켜야 할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후 질의응답(Q&A)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 제시
 - 10가지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영상 감시보다 사생활 침해가 적은 대안을 검토할 것
 - ② 영상 감시를 수행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정하고 해당 목적에 대해서만 영상 감시를 적용할 것
 - ③ 영상 감시 방식 사용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
 - ④ 카메라의 사용 및 보기(viewing) 범위를 최대한 제한할 것
 - ⑤ 영상 감시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고지할 것
 - ⑥ 기록된 이미지는 접근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업무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폐기할 것
 - ① 정보주체에게 영상 감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⑧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영상 이미지를 포함한 정보 열람권을 보장할 것
 - ⑨ 영상 감시 장비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시킬 것
 - ⑩ 영상 감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
 - 한편, 직원 감시용이나 보험사 등을 대신해 민간 조사단체에서 비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상황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결론 및 시사점

▶ 지역별·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는 고조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CCTV를 통한 감시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인정보침해 시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16 https://www.oipc.bc.ca/guidance-documents/1453



- 영상 감시에 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CCTV 사용 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는 경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현장에서 더 쉽게 적용 가능
- CCTV 등 영상 장비를 통한 감시 또는 모니터링이 긴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해당 모니터링이 합법적이고 합당하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시되는 추세
- 이와 관련, CCTV 설치와 이용 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Reference

- 1. Australian Ageing Agenda, Gov't looking for new provider for CCTV trial, 2019.11.4.
- 2. Caughtoncamera, CCTV Legal Requirements: CCTV Laws Explained, 2019.11.20. 접속
- 3. Eastern Daily Press, CCTV cameras in school toilets go live next week, 2019.11.2.
- 4. Government Europa,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aspects of CCTV systems, 2018.3.30.
- 5. Lexology, Landmark court case serves as a useful reminder of CCTV compliance, 2017.2.16.
- 6. Surreyfire, CCTV Legislation a simple guide to UK CCTV laws, 2019.11.19. 접속
- 7. The irish Times,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to investigate State CCTV schemes, 2018.3.1





발행 일 2019년 11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301-2) Tel 1544-5118

-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